

농약의 독성구분에 따른 안전대책은?

사용자 · 취급자 안전위한 수단

수송 · 보관 · 판매 · 사용 · 공급대상·사용자 정한 ‘취급제한기준’ 꼭 지켜야

홍보부

농약 독성구분의 주목적은 사용자나 취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지에 주의사항이나 경고문구 및 그림문자(보통은 해골과 대퇴골을 열찍지는 그림 표시)로 표시하고 있다. 우리 나라에서는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설정,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.

취급제한기준이란 독성구분에 따라 수송, 보관, 판매, 사용 및 공급대상과 사용자를 정하여 고시한 것인데 특히 고독성 농약은 매년 소정의 교육을 받은 농약판매관리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.

또한 흡입독성이 매우 높아 취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인화염정제 및 메칠브로마이드 혼증제는 공급대상기관과 사용자를 엄격히 한정함으로써 독성이 높은 농약에 대한 안전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독성별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

◇ 농약의 취급제한기준

구 분	취 급 제 한 기 준
고독성농약(21품목) 디디론유제 디디브이피유제 메소밀수화제 메소밀액제 메치온유제 메칠브로마이드혼증제 메카발유제 메티유제 메티포액제 모노포액제 벤즈유제	가. 수송 ○ 식료품, 사료,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 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. 나. 보관 ○ 사람의 거주장소, 의약품,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○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 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“고독성농약창고” 임을 표시하고 보통독성농약 및 저독성농약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고독성농약을 보통독성농약 또는 저독성농약과 동일한 창고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. ○ 창고 9.9㎡당 ABC분말소화기(3.3kg) 1대씩(대형창고인 경우 그 시설에 상응하는 적정대수)을 비치하여야 한다. 다. 판매 ○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진열장(“고독성농약” 표시)을 설치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. ○ 구매자의 성명, 주소 및 품목명, 판매수량을 기록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.

구 분	취 급 제 한 기 준
싸이론혼중제 아조포유제 에카록스유제 오메트액제 이피엔유제 인화늄정제 지오리크스유제 파라치온유제 포스핀액제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혼중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장(농협 농약판매관리자는 농협중앙회장)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판매관리자만이 취급·판매할 수 있다. ○ 시·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특별교육을 받은 농업인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. <p>라. 사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용대상작물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○ 시·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특별교육을 받은 농업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. <p>마. 기타(인화늄정제 및 메칠브로마이드혼중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급대상 : 조달청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국립식물검역소, 농협, 한국담배인삼공사,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품방제협회, 수출입식품방제업자에 한한다. ○ 사용자 : 공급대상과 농약제조업(수입업)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. 다만, 실수요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국립식물검역소, 농약제조업자(수입업자)의 책임지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보통독성농약 (185품목)	<p>가. 수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료품, 사료,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 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. <p>나. 보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람의 거주장소, 의약품,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○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“농약창고”임을 표시하고 고독성농약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 ○ 창고 9.9㎡당 ABC분말소화기(3.3kg) 1대씩(대형창고인 경우 그 시설에 상응하는 적정대수)을 비치하여야 한다. <p>다. 판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독성농약과 구분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.
저독성농약 (753품목)	<p>가. 수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료품, 사료,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 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. <p>나. 보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람의 거주장소, 의약품,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○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“농약창고”임을 표시하고 고독성농약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 ○ 창고 9.9㎡당 ABC분말소화기(3.3kg) 1대씩(대형창고인 경우 그 시설에 상응하는 적정대수)을 비치하여야 한다. ○ 가정원예용농약은 보관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다. <p>다. 판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독성농약과 구분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. ○ 저독성농약중 기등록품목을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가정원예용농약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“가정원예용농약”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, 등록된 적용대상중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고시한 화훼(잔디를 포함한다) 및 과수(정원수를 포함한다)용 작물의 적용대상만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.
수질오염성농약 (해당품목 없음)	<p>가. 판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매자의 성명, 주소 및 품목명, 판매수량을 기록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. ○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장(농협 농약판매관리자는 농협중앙회장)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판매관리자만이 취급 판매할 수 있다. <p>나. 사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논에서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○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어독성 I급 (181품목)	<p>가. 어독성 I급</p> <p>1) 판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매자의 성명, 주소 및 품목명, 판매수량을 기록한 후(종자소독약은 제외) 판매하여야 한다. ○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장(농협 농약판매관리자는 농협중앙회장)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판매관리자만이 취급 판매할 수 있다.

구분	취급제한기준
어독성 I 급 (181품목)	2) 사용 ○ 주로 논에 사용하는 농약 -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, 저수지, 상수취수원, 해역 등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○ 논 이외 주로 원예용으로 사용하는 농약 -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, 저수지, 상수취수원,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어독성 II 급 (153품목)	1) 사용 ○ 주로 논에 사용하는 농약 -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, 저수지, 상수취수원, 해역 등으로 근거리에서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○ 논 이외 주로 원예용으로 사용하는 농약 -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, 저수지, 상수취수원,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어독성 III 급 (625품목)	1) 사용 ○ 통상 사용하되 상수원보호구역내 논에서의 항공방제 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고독성농약은 포장지(라벨)에 해골모양의 그림문자를 표시한다.
- 수질오염성 농약의 품목은 수도용으로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.

어독성 I 급과 수도용 농약으로 어독성 II 급에 해당하는 제품은 물고기 형태에 사선을 그은 그림문자를 표시해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어독성 I 급 품목은 수도용으로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. 환경생물에 대한 독성 높은 제품은 포장지에 해당 그림문자를

표시하고 있다.

이밖에 급성독성이나 어독성은 큰 문제가 없으나 사용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 주변 작물 또는 사람이나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취급제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. **농약정보**

◇ 농약의 취급제한기준

품목명(상표)	취급제한기준
핵사지논입제 (솔솔)	1. 공급대상 ○ 정부기관, 농협(전체의 10%이내), 시판상(전국 100개소이내)에 한한다. ○ 다만, 농협 및 시판상의 공급대상은 제조업자가 지정하되 평야지 제외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타 판매업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. 2. 사용자 ○ 공급대상 및 핵사지논 품목을 등록된 농약제조업(수입업)자에 한한다. ○ 다만, 실수요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장 또는 농약제조업자가 실시하는 핵사지논(솔솔)입제의 안전사용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. 3. 취급·판매자는 핵사지논(솔솔)입제의 안전사용 교육을 받 아야 하며 반드시 실수요자의 인적사항(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), 판매수량, 사용용도 등을 기록한 후 판매하여야한다.
파라코액제 (그라목손)	1. 판매자 ○ 구매자의 주소, 성명 및 판매수량을 기록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, 판매장부는 익년말까지 보존하여야 한다. ○ 농약판매업을 2년이상 경영한 자로 농촌진흥청장 또는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장(농협 농약판매자는 농협중앙회장)이 실시하는 "파라파트 안전사용교육"을 받은 자만이 취급, 판매할 수 있다. 2. 사용자 ○ 시·군농업기술센터장이 실시하는 "파라파트 안전사용교육"을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. ○ 파라파트의 취급제한에 관하여는 안전사용교육이 완료되는 200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.